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」 등 타 보훈단체 총리령에서는 중복사업 승인제한과 관련하여 수익계약대상단체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, 반면에 이 규칙에서는 수익계약대상단체가 아닌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역시 이러한 제한이 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2호 중 “그”를 “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제32조제1항제1호”를 “제32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각”을 “수익사업 관련”으로, “그”를 “「행정기본법」 제17조에 따라 그”로, “조건”을 “부관(이하 “승인조건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 단체”를 각각 “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”를 “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”로 한다.

제37조제6항 중 “법 제69조제1항”을 “같은 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제1호 중 “등”을 “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”으로 한다.

제4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.

3.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

4.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

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보훈처장은 제37조제1항·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,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9호서식 중 “(5·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)”를 “(수익사업운영단체)”로 한다.

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2호서식 제5호 중 “수의계약 대상 단체”를 “수의계약대상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

발행번호			처리기간 즉시
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
관련사항	대상구분	5·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	
	보훈번호	등록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	
제출처 (학교명)			

위 사람은 「5·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이 증명서는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.

※ 위 학생에게 휴학·퇴학·정학 등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확인				
우	주소	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지급보증서

신청인	대상구분	보훈번호
	성명	생년월일(성별) ()
	주소	전화번호
지급보증 내역	지급보증기간	부터 까지
	지급보증금액	
	대부종류	
대부재산 표시	소재지(지목, 면적)	
매도자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	계좌번호	
지급보증 내용	귀하가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 지급보증기간 내에 언제든지 지급보증금액을 지급합니다(대부재산을 매도한 사람이 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함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).	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수익사업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제출일	접수일
신고인	단체명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	전화번호
	소재지	
변경 사항	① [] 각 단체 회장의 교체	
	② []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	
	③ [] 각 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의 변경	
	④ []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 변경	
변경 내용	변경일(변경사항을 그 변경일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적습니다)	
	변경 내용	
	변경 사유	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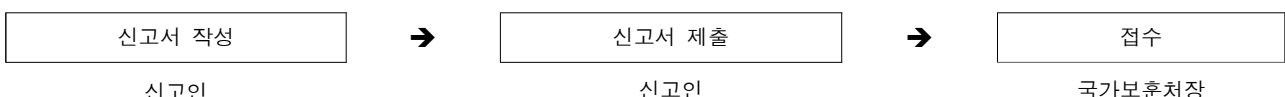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국가보훈처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. 다만, ④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등)	제30조(수익사업의 승인사항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의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	2. ----- ----- ----- ----- 지정 된 수익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-----
③ 법 제66조제2항에서 “총리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각 단체의 직접 운영과 관련 된 시설 또는 인력을 변경하 려는 경우	3. 제32조제1항제2호----- -----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수익사업의 승인조건)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, 각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또는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32조(수익사업의 승인기준) ① (생략)
 ②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각 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, 품목,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

제31조(수익사업의 승인조건) --

 --- 수익사업 관련 -----

 - 「행정기본법」 제17조에 따라 그 -----
 -- 부관(이하 “승인조건”이라 한다)---.

제32조(수익사업의 승인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 ② ----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-----

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 ----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-----

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·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(생략)
2. 품목의 중복 여부: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

제37조(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
준) ① ~ ⑤ (생략)

⑥ 법 제69조제2항 후단에서
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
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승인취
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

[illegible]

④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----- 제8조제2항 및 같은
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
물품분류번호

제37조(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
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같은 조 제1항-----

터 1개월을 말한다.

⑦ (생략)

제42조(실태조사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고용, 임금, 공장, 생산설비, 매출액 등

2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4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(생략)

6. (생략)

③ 각 단체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2조(실태조사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③ -----

-----.

관한 사항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후 사용용도 4.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 5.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현황 및 상태 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(생략) <신설>	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.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<삭제> 제47조(규제의 재검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37조제1항·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, 제4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--	--